

공 사 입 찰 공 고

- 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07호
- 공 고 명 : 검단신도시 3-1공구 공원화장실 건립사업
- 입찰마감일시 : 2026. 8. 13.(목) 12:00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건축사업처 건축사업팀 (☎ 032-260-5078)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 032-260-518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인천도시공사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불임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인천도시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검단신도시 3-1공구 공원화장실 건립사업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등 포함(산정기준: 붙임 공사기간 산정기준 참조)		
공사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3,180,133,000원	금2,891,030,000원	금289,103,000원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 상수도분담금(42,100,000원)을 별도 가산함		
현장위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신도시 3-1공구내 공원(총6개소)		
공사내용	검단신도시 3-1공구 공원화장실 건설공사 * 상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서 등을 참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규제폐지(2021. 1. 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
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7. 29.(수) 10:00
-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8. 13.(목) 12:00
-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3.(목) 13:00 이후,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가. **【자격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유효한 면허를 등록한 자
-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최소지분 5% 이상)** 이내로 결성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공동수급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협정서 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 ※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8. 12.(수) 18:00**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방법 : 건축사업처 건축사업팀 문의(☎ 032-260-5078)

※ 설계도서 열람이 의무는 아니지만, 설계도서 열람을 권장하오니 설계 도서를 열람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 및 설계도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당사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7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기준

가) 평가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 / 추정가격 2,891,030,000원**

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① 재무비율평가, ② 신용평가, ③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기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불임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9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 등록된 경우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인천도시공사에 납부(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 -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가. 인천도시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격 등의 진위여부를 적격심사 시 확인한 결과 조건·내용 등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1,748,573원	국민연금보험료	41,948,740원
퇴직공제부금비	20,312,02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171,76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092,471원	안전관리비	3,427,104원
품질관리비	19,217,659원		

- 나.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 시 **위 금액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68,918,330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위 보험료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필히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에도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사항

- 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전월 청구내역과 지급내역을 대조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15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건설산업활성화 관련 안내

- 가. 인천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자재를 우선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한 자재 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 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인력·자재·장비의 70% 이상을 지역주민 및 인천 소재 업체와 계약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1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전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ISO45001 관련문의 : 안전관리팀(☎ 032-260-5444)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공동도급사 포함)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를 확인서(최근 3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대표자 서명·날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붙임1 참고)되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B등급 이상의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자료제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필요

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등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합니다.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인천도시공사에서 단독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하지만, 대금지급과 관련해서는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각각(5:5)로 청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계약체결(변경 계약 시) 한국토지주택공사분(계약금액의 50%)에 대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연명 기재), 추후 공사대금 청구 시 **인천도시공사 청구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조례에 의거 **청구금액의 2%에 해당되는 인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 및 하도급 관련 안내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및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및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나) 낙찰 받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 포함)와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준공금,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니 해당 시스템 이용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표준하도급 계약서

-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계약 시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대금 직불제

-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금지

-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하도급법령을 위반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하수급인의 거래업체(자재 및 장비 공급 등) 대금 관리 철저

- 관계법령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수급인의 관리 및 대금지급에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되며, 하수급인이 발주처 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반드시 하수급인의 거래업체에도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는지 및 체불금은 없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증빙)를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위 하도급계약은 관계법령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공종의 경우에 한함.

7)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등록 및 운영

- 가)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나)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 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함.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사.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ISO45001)을 구축·운영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인천도시공사의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을 숙지하고 수급인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전자)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문의(032-260-5182)
- 2)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건축사업처 문의(032-260-5078)
- 3) 입찰관련 이의사항은 반드시 **입찰서마감 전일까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4)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 됩니다.

2026년 7월 2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열린경영 청렴신문고의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및 전화(032-473-7272), 팩스(032-260-55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항 목	포함되어야 할 내용
안전보건방침	-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 책임, 권한 등) 명확화 -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함
안전보건활동	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2)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3)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4)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5)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6)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8)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안전보건교육	-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능력을 보유, 유지 -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안전작업 허가제	1)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2)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붙임2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방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종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결	작 성	검 토	승 인
재			

사업명		업체명		시작일		종료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산업재해 현황(20점)								
12. 산업재해현황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합 계								
평 가 등 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